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85 발의연월일: 2021. 9. 2.

발 의 자: 김주영·고용진·김영주

김정호 · 오영환 · 윤건영

윤영덕 • 정일영 • 정춘숙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1 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 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소득세 감면) ①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	
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u>2021년 12월 31</u>	<u>2024년 12월 31</u>
<u>일</u>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	<u>일</u>
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	
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	
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
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
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
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
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
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